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중 소 기 업 사 업 전 환 촉 진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약 칭 :
중 소 기 업 사 업 전 환 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3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을 취소하기 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4.4.18~'5.28) 진행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를 “(중소기업사업 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 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소기업부장관이 법 제 6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지원 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센터설치·운영법인에 3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 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기준을 갖추 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신 설>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 6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 ·운영법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연 락 처	(044) 204 - 7435